

-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-

제 안 설 명 서

[송현1동 287-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]

2025. 1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주차관리과]

제안 설명서

설 명 자: 주차관리과장

송현1동 287-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「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송현1동은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주민 관심도와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.
 - 또한, 인근 송현희망센터 및 송현공원 이용객 등에 대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 -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연접해 있는 기존 든들마을 세모주차장과 연계 및 확장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물론, 이용객 유입 증가를 통해 마을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이에 따라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주차장 조성규모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조성규모는 매입대상지 6필지, 대지면적 773.8㎡이며 주차면수는 22면 정도입니다.
- 재원은 2026년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비 100%이며, 2026년 4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2026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3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
- 총 사업비는 25억원 정도로 부지 매입비 약 19억, 공사비 약 6억 등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 본예산에 편성 할 예정입니다.

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

-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인근 주택 및 원룸 밀집 지역 주민과 송현희망센터, 송현공원 이용객 등의 주차편의를 도모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00925128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5. 11. 14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주차관리과장)

1. 제안이유

- 송현1동 일반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며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, 인근 송현희망센터와 송현공원 이용자 등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질 향상 및 마을 활력 증진에 기여

2. 주요내용

가. 건립개요

- 위치: 달서구 송현1동 287-2번지 일원
- 규모: 주차면 22면정도, 대지면적 773.8m²
- 사업비: 총 2,500백만원정도(주차장특별회계)
- 재원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총사업비	실시설계 용역비	공사비	보상비	비고
2,500	39	553	1,908	

나. 취득대상 현황

위치	지목	면적 (m ²)	편입면적 (m ²)	보상추정액 (백만원)	소유자	비고
송현동 287-2	대	342.6	342.6	1,908	개인(오**)	건물 포함
송현동 284	임야	158.1	158.1		개인(오**)	
송현동 284-11	도로	34.1	34.1		개인(오**)	
송현동 284-5	대	201.6	201.6		개인(오**)	건물 포함
송현동 284-6	도로	32.4	32.4		개인(오**)	
송현동 285-3	도로	5	5			

다. 추진경과

-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: 2025. 9월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: 2025. 9월
- 재정투자사업 심사 : 2025. 10월

라. 향후계획

- 2026년 본예산 사업비 편성: 2025. 12월
- 손실보상협의를 : 2026. 1.~4월
- 실시설계용역 실시 : 2026. 5.~8월
-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: 2026. 9.~2027. 3월

3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

- 붙임 1.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.
2. 송현1동 287-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 위치도.
3. 관련 법규. 끝.

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회계명: 주차장특별회계

(단위: m²,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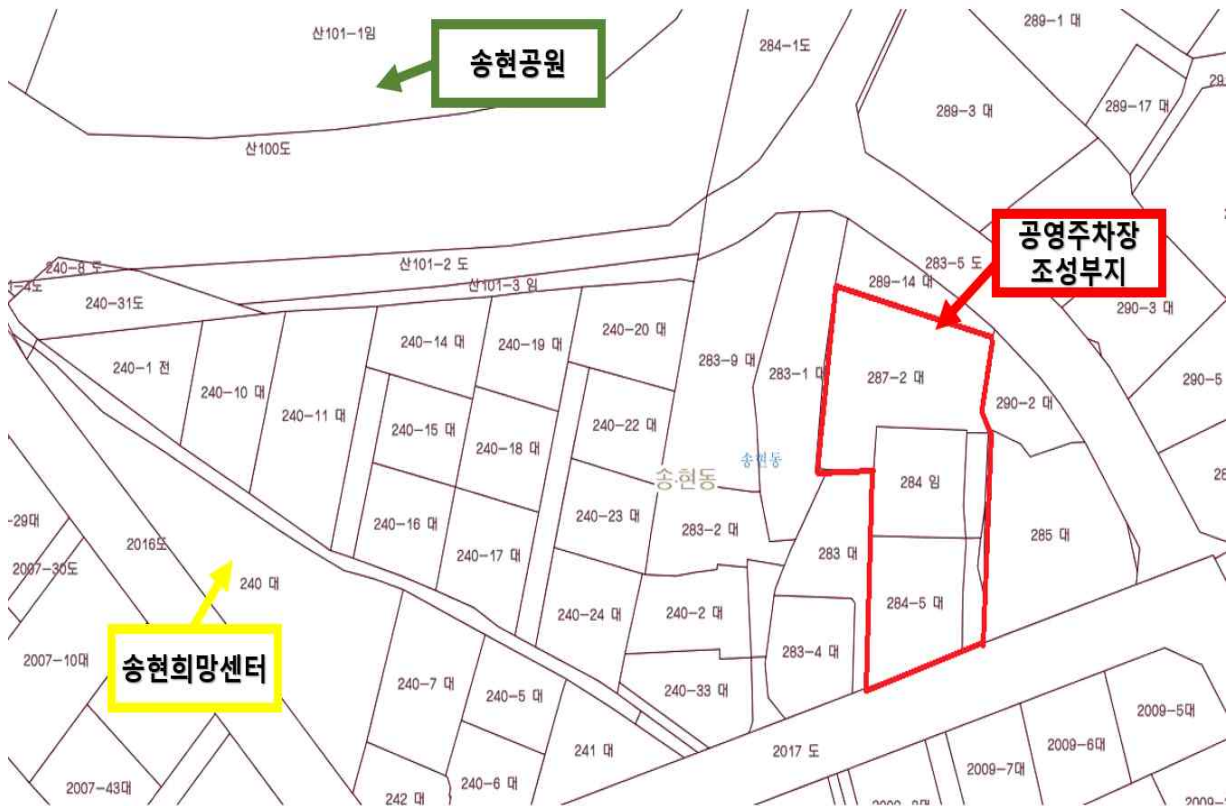
구 분			2026~2027년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
취	계	토지	6	773.8	1,568	6	773.8	1,568	
		건물	2	232	340	2	232	340	
		기타	1	773.8	592	1	773.8	592	
득	1. 매입	토지	6	773.8	1,568	6	773.8	1,568	
		건물	2	232	340	2	232	340	
		기타	-	-	-	-	-	-	
	2. 기타취득	토지	-	-	-	-	-	-	
		건물	-	-	-	-	-	-	
		기타	1	773.8	592	1	773.8	592	

2026~202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주차장특별회계

(단위: m², 백만원)

연번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취득사유	비 고
	구분	소재지	면적				
		계	773.8	2,500			
1	토지 및 건물	송현동 287-2	342.6	1,908	2026년	주차장 부지 매입	○ 부지매입 관련비 : 1,908
		송현동 284	158.1				
		송현동 284-11	34.1				
		송현동 284-5	201.6				
		송현동 284-6	32.4				
		송현동 285-3	5				
2	시설	송현동 287-2번지 일원	773.8	592	2027년	주차장 조성	○ 조성비: 592 - 공사비: 553 - 설계비: 39



□ 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8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

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”이란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을 말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[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(개정 2015. 12. 31., 2022. 9. 21., 2022. 12. 12.)

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 (신설 2022. 12. 12.)

1.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